

<의안번호 제2007-28호>

〔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9.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9. 20.

2.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게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행사시 위문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다. 보훈단체 지원(안 제7조).

-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안 제8조).

-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5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2007년 당초예산 기확보(105,600,000원)

다. 입법예고(2007. 6. 1. ~ 6. 20.)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을 근간으로 하여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1) 조례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본문 중 “국가보훈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 라 한다.)” 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설립허가)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허가서를 교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 제2조(정의)에서는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서 상위 법령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법률상의 표현인 “허가” 라는 명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위 법령의 표현과 다른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조례안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본문 중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한다’ 라고 규정한 내용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보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

①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②선순위 수권유족

③애국지사(상이(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규정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라고 1인에 한해서만 감면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훈문화 창달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생업지원)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第23條 (古宮등의 利用保護)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는 古宮 및 公園등의 시설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を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고궁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1991.12.31, 2002.12.30>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02.12.30, 2004.3.17>
-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2.12.30>